

사장님~

청년 채용하고 지원금 받아주세요!

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

사업소개

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
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
청년 고용 활성화 목적으로 하는 청년층 일자리 사업
*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사업

신청방법

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
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운영기관
원주상공회의소 - (원주, 횡성지역) 또는
원주상공회의소(영월) - (영월, 평창, 정선지역) 선택

* 참여 신청 이전(3개월 이내)에 미리 채용한 청년을
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 청년의 정보를 신청서에
반드시 기재하여야 함

지원기간

※ 청년 1인당 지원금
월 60만원, 1년 근속 시 720만원,
2년 근속 시 480만원, 총 지원금 최대 1,200만원

※ 채용 후 6개월간의 지원금: 일시 지급
(단, 3개월 고용 유지 시, 조기지급 가능)
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나누어 지급

★ 선착순 지원 ★

신청절차



누리집 사업신청
(www.work.go.kr/youthjob)
운영기관: 원주상공회의소 지정

운영기관 적격심사 및
참여 기업 안내

지원협약 체결
(운영기관 - 기업)

지원대상

《기업》

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
(상시근로자)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

* 소비향락업,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 제외
* 필요에 따라 5인 미만 기업도 일정조건 충족시 참여 가능

《청년》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
※ 공통 충족사항

-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(정규직)
-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
-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, 대학 재학 및 휴학생은 제외
(대학·대학원 졸업예정자 제외)
- 군필자: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

※ 취업애로유형

-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
- 고졸 이하 학력 청년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
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
-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-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인정 청년
(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 등)
- 북한이탈청년
-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
-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

문의사항

T. 033-743-2991
F. 033-743-2995

연제영 대리 / 정유식 사원 / 신정연 사원



고용노동부



원주상공회의소